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2쪽 중 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지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대출 이자 지원 (①)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한시 지원 (②)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비 지원 (③)
전세사기 피해주택	주소	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민등록 주소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
대리인 ※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	성명	생년월일	
	주민등록 주소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
▶ 지원신청 내용 ※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,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			
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	대출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금저리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환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(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) 버팀목 대출	
	대출금액	원	대출기간 ~
	대출은행	은행	대출금리 연 %
	월 이자금액	원	이자납부일 매월 일
	이자지원 신청기간 (최대2년)	~	최우선변제금액(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작성) 원
②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한시 지원	월세주택 주소		
	계약일자	전입일자	
	임대차 계약기간	~	월세지원 신청기간 (최대2년) ~
	월세금액	원	월세납부일 매월 일
	주택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텔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립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중 <input type="checkbox"/> 다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
③ 이주비 지 원	이주주택 주소
	이사일자
	이주비 관련 지출내역 (건명, 지출금액)

▶ 신청인 계좌번호 ※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.

신 청 인 계좌번호	은행명	예금주
	계좌번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선택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사항 (필수)

- ①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을 약속합니다.
- ② 만약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취소(중단)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장 귀하

위 임 장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
위임받는 사람	이름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
	주소	
위임사항	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신청 (지원사업명 :)	

본인은 위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해야 합니다.
2.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3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